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

(최 동 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54

발의연월일: 2020년 6월 일

발 의 자: 최동철, 황동현, 김병진, 이충숙 이충현, 송순효, 김성한, 정정희 송영섭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강서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 용품 사용 저감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
나. 1회용품, 다회용품, 공공기관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. (안 제2조)

다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
라.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을 규정함.(안 제4조)

마.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의 제한을 규정함.(안 제5조)

바.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
사.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7조)

아. 시행규칙 마련 근거를 규정함.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협조부서: 자원순환과

다. 입법예고: 2020. 6. 5. ~ 2020. 6. 9.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1회용품”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, 접시, 용기, 나무젓가락 등으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2. “다회용품”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.
3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

나.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
다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강서구”라 한다)가 설립한 공단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,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저감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저감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3년마다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(이하 “저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
2.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
3.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지원사업
4.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

제5조(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·제공 제한)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·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·제공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 할 수 있다.

1. 강서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·단체가 주최, 주관하는 행사
2. 강서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

제6조(교육 및 홍보 등)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
2.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
3.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표창)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·단체 및 개인에게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	관계법령

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14. (생략)

15. "1회용품"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6. ~ 17. (생략)